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1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9.

발의자 : 강기윤·이종성·전봉민

김미애·최재형·백종현

유경준·박대수·이양수

김용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.

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,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.
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·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,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·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,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

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(안 제10조).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”을 “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급 대상 · 방법 · 시기 및 지급 절차 등”을 “지급 대상 · 규모 · 방법 ·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·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<u>200만원의 첫 만남이용권</u>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<u>지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 절차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p>	<p>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·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<u>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</u>(이하“이용권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 <p>---<u>지급 대상·규모·방법·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</u>-----</p> <p>-----.</p>